



#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 개정 입안 예고

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제공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·포장에 “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”의 표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. 또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개별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 보장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 예고했다. 본고에서는 주요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.

- 편집자 주 -

## 1. 주요내용

### 가. 복합원재료 표시방법 개선[안 별지1 제1호가목7)가)(2)]

(1) 원재료명을 표시함에 있어 혼합양념(다대기) 등의 경우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원재료로 풀어서 표시할 수 있어 이를 실제 사용한 원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

(2)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 명칭과 팔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

(3)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기대

### 나. 소비자 불만 등 신고번호 표시의무화[안 별지1 제1호가목10)차) 신설]

(1)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·포장에 “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”의 표시를 하도록 함

(2) 부정·불량식품의 신속신고를 유도하여 신속대응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대

##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
## 포장과 법률

별지1 제1호가목7) 중 가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7)다) 중 (1)을 삭제하며, 같은 목 10)에 차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)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.

(1) 식품의 제조·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(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조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, 중량비율로서 2%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.

(2)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팔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차)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·포장에 “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등과 동일한 식품등은 2010년 7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. 이 경우 수입하였던 식품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. [ko]

### 신·구조문 대비

현 행	개 정 안
<p>[별지1]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(제9조 관련)</p> <p>1. 식품등의 일반기준</p> <p>가. 식품(수입식품을 포함한다)</p> <p>1) ~ 6) (생 략)</p> <p>7) 원재료명 및 함량</p> <p>가) 식품의 제조·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(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. 이와 같다)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</p>	<p>[별지1]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(제9조 관련)</p> <p>1. 식품등의 일반기준</p> <p>가. 식품(수입식품을 포함한다)</p> <p>1) ~ 6) (현행과 같음)</p> <p>7) 원재료명 및 함량</p> <p>가)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.</p> <p>(1) 식품의 제조·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(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조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표기할 수 있으며, 중량비율로서 2%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, 중량비율로서 2%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.</p> <p>(2)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 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
나) (생 략)	나) (현행과 같음)
다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)와 나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	다) _____
<p>(1)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 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〈삭 제〉</p>
(2) ~(11) (생 략)	(2) ~(11) (현행과 같음)
라) ~바) (생 략)	라) ~바) (현행과 같음)
8) · 9) (생 략)	8) · 9) (현행과 같음)
10) 기타 표시사항	10) 기타 표시사항
가) ~ 자) (생 략)	가) ~ 자)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차)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 · 포장에 “소비자 불만 신고는 국번없이 1399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